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정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43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30.

발 의 자 : 박정하 · 윤한홍 · 조은희
김재원 · 진종오 · 고동진
박상웅 · 김위상 · 엄태영
김형동 · 김희정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·보존·조사·연구·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,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, 이들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, 비수도권 지역에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이 설립되지 않은 곳이 존재하여,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에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이 1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,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 설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, 국민 모

두가 균형있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 10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 후단 중 “권역별로 균형 있게”를 “광역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설립과 운영) ① ~ ③ (생략)	제10조(설립과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·보존·조사·연구·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,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<u>권역별로 균형 있게</u>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광역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</u>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-
⑤ ~ ⑧ (생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